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4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함(안 제16조).
-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설계안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협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17조).
-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그 설치로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어업인에 대해서는 투자규모 등을 우대할 수 있음(안 제18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송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서 복수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하도록 하고, 설비를 건설한 송전사업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기획재정부장관은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공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특히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22조 및 제23조).
-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해상풍력발전사업 목적의 풍황계측기 설치허가를 금지하고,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의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금지함(안 제33조 및 부칙 제1조).
- 기존 법률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의 종전 사업부지는 발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함(부칙 제2조제2항).
-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집적화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집적화단지를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집적화 단지에 포함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간주함(부칙 제3조).

II.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체계·자구에 대한 검토

- 제정안의 전반적인 체계·자구에 대해서는, 복수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동접속설비(안 제20조제1항제1호) 등과 같이 의미 이해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법문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서 인용조문을 적시하여 정의¹⁾하고,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형량을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여 상향조정²⁾하며, 과태료 부과규정의 요건을 정비³⁾하는

1) 제정안 제20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송전사업자가 건설하는 공동접속 설비란 복수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일정 범위의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의미함에도, 제정안에서는 별도로 이를 정의하고 있지 않음.

「전기사업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6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각 목 생략)

2) 제정안 제49조제4항은 안 제47조에 따라 비밀유지의무를 부여받은 위원·공무원 등이 그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제3호등 관련 입법례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9.15.] [법률 제19715호, 2023.9.14., 일부개정]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기관 의견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관련 안 제22조·제23조⁴⁾)

- 제정안 제22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⁵⁾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3. 제7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3) 제정안 제51조제2항은 안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한 경우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다만, 안 제51조제2항은 그 부
과대상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라고 규정하여 안
제4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누락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충하는 방안이 검토
될 필요가 있음.

제정안

제44조(보고 및 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해
상풍력발전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사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과태료) ②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정안

제22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특히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
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
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안 제23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특히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6)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이러한 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먼저, 안 제22조의 내용 중 신속 추진이 필요한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에 관하여는, 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재정운용 효율성·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규율은 개별법이 아닌 「국가재정법」의 체계를 이용해야 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10호7)(국가 정책적으로

5) 「국가재정법」 [시행 2024. 12. 31.] [법률 제20610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00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40조(예산의 편성) ③ 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7) 「국가재정법」 [시행 2024. 12. 31.] [법률 제20610호, 2024. 12. 31., 일부개정]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정안과 같은 특별법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다음으로, 안 제23조의 내용 중 특히 신속추진이 필요한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절차를 두려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공공기관의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정책적 사업으로서 국무회의를 거쳐 추진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같은 법 제40조제3항제7호8))하고 있으므로, 사업별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조사 실시·면제 등을 위하여 제정안과 같은 개별법에 이러한 면제 절차를 마련하는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중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00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40조(예산의 편성) ③ (본문 생략)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 6. (생략)

- 7.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전문위원 이 은 정)